

2026년 동두천시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
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사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『2026년 사물인터넷 [IoT]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』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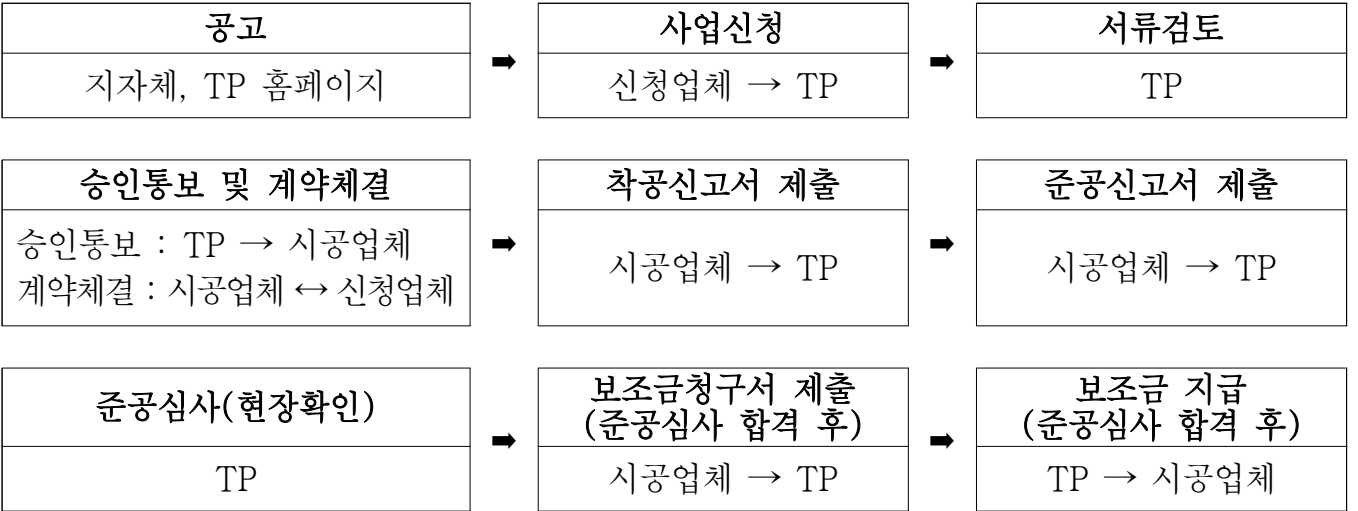
2026년 7월 27일
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

1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2026년 의정부시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2026년 7월 ~ 2026년 12월
- 주관기관 : 동두천시
- 대행기관 :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
- 사업규모

시군	사업비(단위 : 천원)	사업량(대)	비고
동두천시	24,000	10	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% 지원

□ 추진절차



□ 지원내용

○ 부착대상 방지시설*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60% 지원(부가세 제외)

*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[별표 9의 2]에서 정하는 시설

○ 다수의 배출 및 방지시설 보유 시 전체 신청 가능(개선계획서 개별 작성)

□ 지원금액

(단위 : 만원)

구분		부착비용	보조금 지원액		
			계	국비	지방비
전류계*	배출시설	30	18	12	6
	방지시설	30	18	12	6
차압계(압력계)		40	24	16	8
온도계		50	30	20	10
PH계		100	60	40	20
IOT게이트웨이		160	96	64	32
VPN		40	24	16	8

* ID팬(유인송풍기), FD팬(압입송풍기)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

* 흡수·세정 시설(스크러버)의 경우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
[단, 부착 시 18만원(부착비용의 60%) 추가 지원]

※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%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

□ 지원조건

○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

○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(www.greenlink.or.kr)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

○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

□ 지원대상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
 - ①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37조의3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 -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사설
 - ③ 방지사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

□ 사업 참여 기준 및 선정 방법

- 신청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
 - 신청사업장은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고, 신청서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후 사업 승인
 - 선정 우선순위
 - ① 방지사설 면제신청 습식시설
 - ② 기존 시설(`22.5.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)
 - ③ 기타(최근 3년 이내 지원이력 기업) 순으로 우선지원
- ※ 동일 조건일 경우 선착순 선정
- 사업 접수 수량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
 - 신청인의 사업포기, 승인 취소 대비하여 후순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음

□ 제외대상

-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(중앙, 지방)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
-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
-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,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

□ 유의사항

-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(www.greenlink.or.kr)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될 수 있음
- 사물인터넷[IoT] 계측기는 반드시 “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”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 -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
 -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
 -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,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

-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음(1회에 한함)
 -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필수 서류(착공신고서 등)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
-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
 - 사업 수행시 “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”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·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, 산업안전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
- 보조금 관리법
 - 『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』 (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)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, 제 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함
 -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제 41조에 따라 ①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한자, ②제26조의 6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자 ③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한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
- 예산 및 접수현황에 따라 선정기준은 다를 수 있으며, 지원 금액은 추후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변경 및 조정되어, 신청금액과 달리 승인될 수 있음
-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여 함
- 기타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(환경부 대기관리과 '26.1.)』 을 따름

□ 공고 및 접수기간

- 공고기간 : 2026. 7. 27.(월) ~ 2026. 8. 31.(월)
- 접수기간 : 2026. 7. 27.(월) ~ 2026. 8. 31.(월), 17:00
- ※ 사업 관련문의 :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후환경에너지팀(☎031-539-5108)
- 기타사항
 -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, 지원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
 - 선정 이후 원본서류 제출을 요함(원본 제출기한은 추후 통보)
 - 예산 현황에 따라 지원대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, 선정시기는 2026년 3월 中 예정

□ 사업신청방법

- 네이버 폼 접수(방문, 우편접수 불가)
- **접수링크** : <https://naver.me/xHmxKu3M>
- 1개 폼에 1개 신청업체로 작성
- 첨부파일
 - 신청서류 일체 하나의 파일로 scan하여 제출(제목 : 00시_사업장명 신청서)
 - 신청기업 회신자료(Excel) 파일 제출(제목 : 00시_사업장명 회신자료)
- ※ 중복접수 시 선순위 자료 인정
- ※ 파일제목과 서류 불일치 시 사업 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10MB 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
- ※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**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**, jj7476@gdtp.or.kr로 추가 제출
- 접수 사이트 차단 가능성이 있기에 동일 IP기준으로 3초 이내 15회 이상 접수 불가

□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구성

구 분	장치의 기능	비 고
측정기기	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	
IoT 게이트웨이	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·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	
가상사설망 (VPN)	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- 측정기기(IoT 게이트웨이) 또는 통신장치(통신모듈)에서 SSL (Secure Socket Layer)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- 장비 호환성 · 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	
IoT 관리시스템	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(www.greenlink.or.kr), 운영기관 : 한국환경공단 ※ 문의사항 연락처 : 1533-3301	

※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(www.greenlink.or.kr)으로 전송되어야 하며, 측정기기 규격, 사양, 부착 절차, 유지·관리 등은 “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 편람(2025.6 제정)” 참조

□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

-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
-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(한국환경공단)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
 -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(KOLAS)의 성적서*(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)
 - * 교정성적서에는 최소, 중간, 최대값 기준 최소 3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하며, ‘0’이 포함될 경우 ‘0’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 제출하여야 함
 - ② 측정기기 사양서**(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)
 - * pH계의 온도보상 기능 여부가 사양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,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하여야 함

□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사양

구분	전류계	차압계	온도계	pH계
설치대상	- 배출시설(공통) - 방지시설(공통)	- 여과집진시설 - 흡착에 의한 시설		- 흡수에 의한 시설
측정범위 ¹⁾	0 ~ 600A	0 ~ 500mmH ₂ O	-40 ~ 100℃	0 ~ 14pH
오차 ²⁾	±5% 이내			
동작온도 ³⁾	-20 ~ 60℃	-20 ~ 60℃	-20 ~ 60℃	0 ~ 80℃
온도보상	-	-	-	0 ~ 50℃ ⁴⁾
운용전원	DC 24V(AC 100 ~ 220V), 60Hz			
공통사항	(출력신호 ⁵⁾) 4 ~ 20mA (표시장치 ⁶⁾)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(내구성) 실내·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			

- 1)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.5배 이내를 권장(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)
 -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
 - 차압계,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
- 2) 공인시험기관(KOLAS) 성적서의 평균 오차(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)
- 3)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. 단,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
- 4)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
- 5)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
 - 디지털(유선) 통신 방식(RS-232C, RS-422, RS-485)을 이용하는 측정기기
 -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
- 6)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같음할 수 있음

※ 전류계, 차압계,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

※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[배출시설(배출 1, 배출 2), 방지시설 송풍기(송풍 1, 송풍 2), 방지시설 순환펌프(펌프 1, 펌프 2), 전기집진시설(전기 1, 전기 2) 등]을 표식하여야 함

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

신청인	상 호(사업장 명칭)		사업자등록번호				
	성 명(대표자)		성 명(담당자)				
	연 락 처(담당자)		이메일(담당자)				
	주 소		(전화번호:)				
사업장 현황	업 종(종 수)		(중)	주생산품명			
	신청하는 대기배출시설 현황						
	배출시설명	용 량	수 량	방지시설 종류	용 량	수 량	최근 자가측정 결과(측정일)
	예)도장시설	예)30HP	예)1	예)여과 및 흡착	예)300	예)1	
중복지원여부		해당 / 해당없음 ※지원받은 시설임이 확인된 경우 사업비 환수가 될 수 있음					
설치대상	종 류		단가	수량	금액	비고	
	pH계(흡수세정시설)		1,000,000			단위 : 원 (VAT 제외)	
	전류계(세정/전기시설)		300,000				
	차압계(압력계)		400,000				
	온도계		500,000				
	전류계(배출시설)		300,000				
	전류계(방지시설)		300,000				
	IoT게이트웨이		1,600,000				
	IoT게이트웨이(복수형)		2,080,000				
	VPN		400,000				
	합 계						
공사금액(VAT 제외)	총공사금액(A+B)		금3,500,000원(금삼백오십만원)				
	총 지원금(A)		금2,100,000원(금이백일십만원)				
	총 자부담(B)		금1,400,000원(금일백사십만원)				
시공업체	상호(사업장 명칭)		사업자등록번호				
	성 명(대표자)		성 명(담당자)				
	연락처(담당자)		이메일(담당자)				
	주 소		(전화번호:)				
위와 같이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합니다.							
년 월 일 신청인(사업장 대표자) (인감도장)							
신청인(시공업체 대표자) (인감도장)							
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							

□ 구비서류

1.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1부.
2.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 1부.
3. 배출시설 설치 허가(신고)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(전문) 1부.
4. 사물인터넷[IoT] 품질보증 시험성적서(최근 12개월 내) 1부.
5. 사업장 위치도
6. 중소기업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 발행) 1부.
7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신청업체)
8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(양식 참조) 1부.
9.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(양식 참조) 1부.
10. 이행확인서
11. 사후관리이행동의서
12. 보조금 반납 협약서
13. 사업자등록증 사본(신청기업, 시공업체) 각 1부.
14. 인감증명서 사본(사용인감계)(신청업체, 시공업체)
15. 위임장

※ 구비서류 순서에 맞춰 SCAN하여 제출

※ 모든 서류 날인 시, 인감도장을 사용하며, 날인 된 서류는 선정 이후 원본 제출

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설치계획서

신청(배출)업체		설치(시공)업체	
		IoT 제조사	

1.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

1) 관련시설* : (배출) 도금(30m3)*2, 탈사(15m3)*2 (방지) 흡수예의한시설(300m3)*1

설치대상*	내역			비고
	단가	수량	금액	
전류계(배출시설)	300,000			단위: 원 (VAT 제외)
전류계(방지시설)	300,000			
전류계(세정/전기)	300,000			
차압계	400,000			
온도계	500,000			
pH계	1,000,000			
IoT 게이트웨이	1,600,000			
복수형 IoT 게이트웨이	480,000			
VPN	400,000			
합계				

*설치대상: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(非)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

2. 상세 설치 계획 : 별첨 작성

-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
- ② 전체(배출시설, 방지시설, 판넬 등)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위치 상세도
- ③ 현장 사진(해당시설 및 설치위치)
-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(KOLAS) 성적서
- ⑤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(협력업체) 계약서

3. 현장조사 후 설치대상이 일치(허가사항·현장)함을 확인하였고,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치계획을 작성 제출할 것이며 설치 현장 확인후, 이에 대한 추가 및 변경사항(측정기기 수정 설치 등) 발생시, 설치(시공)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.

4. 설치(시공)업체는 사물인터넷 부착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확인,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, 신청(배출)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,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, A/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.

20 . .

신청(배출)업체 : 0000 대표 (인)

환경전문공사업체 : 0000(주) 대표이사 (인)

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

[별첨] 상세 설치 계획(도면 등)

※통합전원에(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)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(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)

-도면과 사진 등 내용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(사진깨짐현상 등 필히 확인바람)

-현장에서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, 이격거리 등 바로 파악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

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

부착기기	근거
전류계(배출시설)	예시) -부착면제 대상이 없는 경우 배출구 1번 (흡수예의한시설)의 경우 배출시설 2기를 포함함 1. 산처리시설 5.6㎡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. 탈지시설 3.7㎡은 작업 특성상 가열기를 사용하므로 가열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(상시 온도 유지를 위해 조업시간 외 가동하므로, 판정제외 시간 신청 예정) -부착면제 대상이 있는 경우 배출구 1번 (흡수예의한시설)의 경우 배출시설 3기를 포함함 1. 산처리시설 5.6㎡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. 탈지시설 3.7㎡은 [1.산처리시설 5.6㎡]과 연속공정이므로 부착 면제하고자 함.
전류계(방지시설)	예시) 배출구 1번 (1차)여과예의한시설 + (2차)흡착예의한시설로 송풍기 1기 현장설치 확인. 송풍기 가동 확인을 위해 전류계 1기를 설치하고자 함
차압계	예시) (1차)여과예의한시설+(2차)흡착예의한시설로 (1차)여과예의한시설은 집진시설 본체가 분리되어 있고, 내부 확인 결과 각각 차압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기를 설치하고자 함
온도계	예시) 방지시설 전단 인입배관이 두 개로 현장 확인되어 각 배관에 1기씩 총 2기를 설치하고자 함
pH계	
IOT 게이트웨이	예시) 외부요인(직사광선, 비 등), 눈높이,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함(도면 참조) 배출구 1~4기를 한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복수굴뚝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자 함
VPN	예시) 배출구 이격거리가 큰 사업장으로(00m) VPN 2기를 설치하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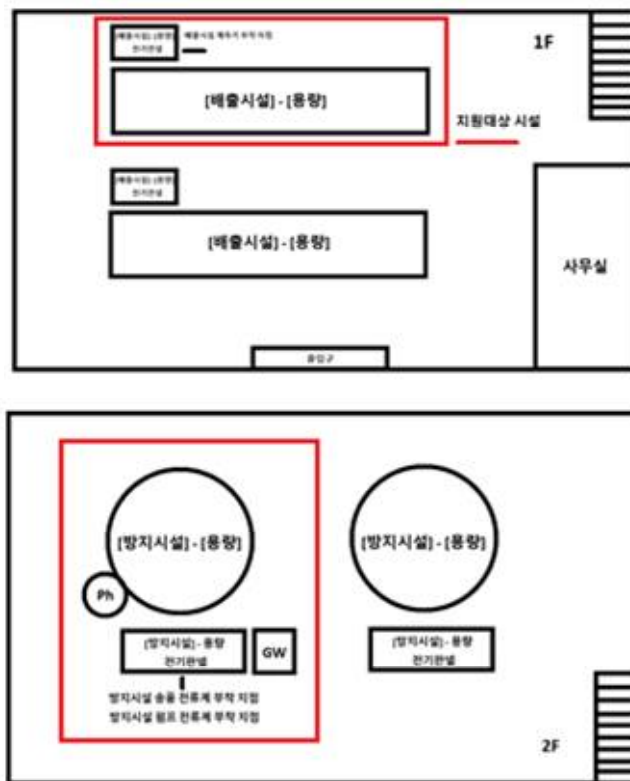
② 전체(배출시설, 방지시설, 판넬 등)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

1) 전체 배치도(측정기기,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)

배치도(상세도면)

***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함. 전체시설이 포함되도록 작성[지원대상 표기 필요]**

1.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배치도(해상도 관련) 제출
2. 주 출입구, 사무실 등 표기
3. 층수가 다른 경우 배치도 내 F 표기
4. 지원사업 대상시설을 명확하게 표기
5. 부착기기(전기판넬 위치 등) 및 GW 설치 위치 표기
6. 배출시설명과 용량 표기
7. 시설간 이격거리 표기



2) 측정기기 사양서* 및 해당사진

* *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p17~18* 참조

③ 현장 사진(해당시설 및 설치위치)

*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,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 기재

○ 방지시설 ○

			
방지시설명(용량)	방지시설명(용량) GATE WAY 설치 위치	송풍시설(전류계) 설치 위치 (제어판넬 외함)	송풍시설(전류계) 설치 위치 (제어판넬 내부)

○ 흡수·예의한시설 ○

		
방지시설 pH계(순환조) 설치 위치	방지시설 펌프 설치위치 (제어판넬 외함)	방지시설 펌프 설치위치 (제어판넬 내부)

○ 흡착 / 여과·집진시설 ○

		
온도계 설치 위치	차압계 IN 설치 위치	차압계 OUT 설치 위치

○ 배출시설 ○

		
배출시설명(용량)	배출시설(전류계) 설치 위치 (제어판넬 외함)	배출시설(전류계) 설치 위치 (제어판넬 내부)

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(KOLAS) 성적서

※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 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(KORAS) 성적서 제출시, 각각 1Page 선명한 해상도의 성적서를 첨부하고, 실제 사용할 제품에 대한 성적서만 제출

ex)

[흡수에의한시설] - [Ph계, 실제 부착 CT(50A, 150A) 성적서 제출] -[차압계, 온도계 성적서 제외]

[세정집진시설] - [실제 부착 CT(50A, 100A) 성적서 제출] -[Ph계, 차압계, 온도계 성적서 제외]

[여과집진시설] - [차압계, 온도계, 실제 부착 CT(100A, 150A) 성적서 제출] - [Ph계 성적서 제외]

- 1) 전류계: 배출·방지시설
- 2) 차압계(압력계)
- 3) 온도계
- 4) pH계
- 5) Gateway
- 6) VPN

⑤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(협력업체) 계약서

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(협력업체) 계약서

아래 내용 명확히 확인가능한 *협력업체계약서로 첨부바람

- 추후 AS(하자보수, 유지보수, 손해배상책임 등) 담당업체

*협력업체계약서

Gateway업체와 설치업체 간의 상호계약서(공단제공 협정서 서식 참고)

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

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(신고)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예시

※ 허가증 전체 제출!! 변경사항 가동개시 페이지 필수 첨부

※ 신청하는 시설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(신고)증에 표시 하여야 함!

<예시>

허가(신고)번호		제 호							
대기배출시설설치 ([]허가증, [√]신고증명서)									
상 호 (사 업 자 명 칭)	경기대진테크노파크	종 별	4/5 중						
성 명 (대 표 자)	홍길동	사업자등록번호	000-00-00000						
사 업 장 소 재 지	경기도 동두천시	전 화 번 호	000-0000-0000						
업 종	00업	일 일 조 업 시 간	00시간						
연 료 사 용 량									
허 가 신 고 사 항	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방지시설								
	생산공정	배출시설명	연료 및 원료사용 량	용량	수량	대기오염물질 배출항목	방지시설명	용량	수량
	00	00시설	00	00	00	00	000시설	00	00
	오염물질 발생량								
	오염물질종류 (먼지, SO ₂ , NO ₂)			연료 및 원료사용량		배출계수		발생량 (00 톤/년)	
	먼지			00		00		000	
	황산화물								
	질소산화물								
	허 가 조 건								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([]설치를 허가, [√] 설치신고를 증명) 합니다. 경 기 도 동 두 천 0000년 00월 00일									

<변경사항 및 가동개시 필수 제출>

<변경사항>

1

일 자	내 용	확 인
0000.00.00	설치신고	

<처분사항>

일 자	내 용	확 인

<참고사항>

일 자	내 용	확 인
0000.00.00	· 가동개시 신고	

<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>

배출시설명	오염물질명	배출계수	발생량	배출농도	배출량	오염물질처리방법
00시설	000	00	00	00	00	0000

<배출구별 오염물질 발생량(총합)>

배출구 번호	오염물질	오염물질 발생량
1	먼지: 황산화물: 질소산화물	1.525

<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방지시설>

생 산 공 정	배 출 시 설			방 지 시 설			
	배출시설명	용 량	수 량	대기오염물질 배출항목(배출 시설일련번호)	방지시설명	용 량	수 량

사업장 위치도			
업 체 명		대 표 자 명	
본 사 연 락 처		팩 스	
사 업 장 주 소			
사 업 장 연 락 처		팩 스	
담 당 자 연 락 처		핸 드 폰	
<약 도> (※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-카카오맵 지도 활용)			

□ 중소기업 확인서 예시

※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

<예시>

발급번호 : 0000-0000-000000

중소기업 확인서
[소기업(소상공인)]

기업명 : 경기대진테크노파크

사업자등록번호 : 000-00-00000

법인등록번호 : 000000-0000000

대표자명 : 홍길동

주소 :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

유효기간 : 0000.00.00 ~ 0000.00.00

용도 : 공공기관 입찰용

위 기업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소기업(소상공인)임을 확인합니다.

0000년 00월 00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



- 발급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을 통해 확인 가능.
-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,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.
-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.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위탁 · 제공 동의서

본 동의서는 「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지원사업(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포함)」의 신청·심사·설치·준공확인·보조금 집행·정산·사후관리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.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필수 항목 미동의 시 사업 신청 접수, 심사,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[필수]

[수집 ·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]

· 개인식별정보(성명, 연락처, 주소, 이메일,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 정보)

[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]

·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, 기술·서류검토,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, 보조금 집행·정산 및 사후관리, 중복지원 확인

[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
·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,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

☐ 동의함

☐ 동의하지 않음

2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[필수] 및 처리위탁 안내

[위탁·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]

· 개인식별정보(성명, 연락처, 주소, 이메일,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 정보)

[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(제공)]/수탁자(위탁)

· (제공) 기후에너지환경부, 지방환경관서, 지원 지자체(시장·군수·구청장)

· (위탁)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

[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]

· (제공기관) 보조금 사업 접수·심사·집행·정산·사후관리 및 관리·감독, 중복지원 확인, 감사·점검 대응

· (전문기관/수탁자) 기술·서류검토,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, 사후관리 지원

[개인정보를 위탁·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
·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

[위탁업무 안내]

·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검토·서류검토·현장확인·사후관리 지원 등 일부 업무를 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☐ 동의함

☐ 동의하지 않음

본인은 본 “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”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, 이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성 명 : (인)

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☐ 목적

-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“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”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·조회 및 활용
-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·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·활용

☐ 수집·조회 및 활용 정보

- ① (이력정보)신청일,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
- ② (과세정보)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“매출액 , 개업일, 휴업기간, 폐업일”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“수출액”에 한함

☐ 수집·조회 및 활용 기관

-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

☐ 동의 효력기간

-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,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
 - *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
 - *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- 기업정보 수집 시점 :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
 - *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·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6 년 월 일

기업명 ○ ○ ○

대표자 ○ ○ ○ (인감도장)

※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·조회·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.

※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사후관리 이행 동의서

사업장은 「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」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(IoT)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사업장 및 시공업체는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사후관리 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.

2026. . .

신청인(대표자) : (인감도장)

환경전문공사업체(대표자) : (인감도장)

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

보조금 반납 협약서

사업장명	
주 소	
대표자 성명	(인)
생년월일	

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,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를 미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.

〈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〉

IoT 측정기기 사용기간	보조금 반납율
3개월 미만	80%
3개월 이상 6개월 미만	70%
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	60%
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	50%
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	40%
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	30%
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	20%

-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(합격일자)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
-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,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.

[구비서류 13]

☐ 사업자등록증 자료 예시

※ 신청사업장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씩 사본 제출

<예시>



사업자등록증

(법인/일반사업장)

등록번호 : 000-00-00000

법인명(단체명) : 경기대전테크노파크

대표자 : 홍길동

개업연월일 : 0000년 00월 00일 법인등록번호 : 000000-0000000

사업장소재지 :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

본점소재지 :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

사업의종류 : 00업

발급사유 :



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: 여() 부(✓)

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: tax@webless.co.kr

0000년 00월 00일

0000서장



